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교진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8제2항제2호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- 가.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나열한 ‘출입문, 복도, 계단’으로 정하고,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구조, 이용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수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57조의2제2항)
- 나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,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한 세부지침을 제공하고자 함(안 제57조의2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28. ~ 6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학교의 장은 해당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학교시설의 구조, 이용 빈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학교의 정문·후문 등 출입문과 학교 건물의 출입문
2. 복도
3. 계단

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, 영상정보의 보관기간, 열람 및 제공 절차, 접근권한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의2(학생의 안전대책 등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7조의2(학생의 안전대책 등) <u>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</u> <u>②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 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학교의 장은 해당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학교 시설의 구조, 이용 빈도 및 위험 도 등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 확 보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 에서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</u> <u>1. 학교의 정문·후문 등 출입문 과 학교 건물의 출입문</u> <u>2. 복도</u> <u>3. 계단</u> <u>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, 영상정보의 보관기간, 열람 및 제공 절차, 접근권한 관리 등 운 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658